

- 동부지역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-
**2017년도 농촌자원 6차산업화
시범사업 추가 신청 안내**

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
동부농업기술센터

2017년 농촌자원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가 신청안내

□ 추진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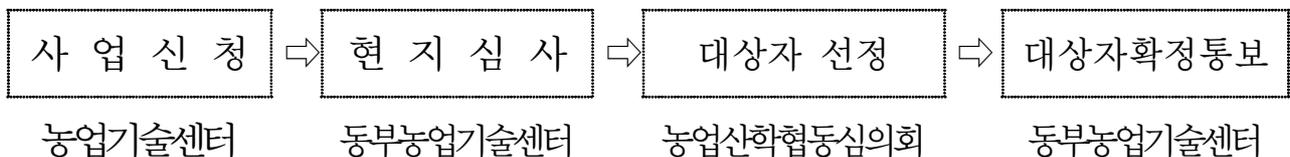
- 홍보 및 신청기간 : 2017. 9. 20. ~ 10. 10.
- 신청장소 :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부서
- 신청방법
 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< 신청서류 >

- 기본서류
 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배우자 포함)
 -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
- 추가서류
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인)
 -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
 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 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골대학 등)

- 서류 및 현지심사 : 사업에 적합한 농가 발생시 현지심사
- 선정 심의회 개최 : 대상자 확정 후 서면심의
- 사업추진 : 2017. 10월 ~ 11월
- 사업평가 : 2017. 10월 ~ 12월(결과평가 1회)

□ 사업대상자 선정 : 2017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(붙임)에 의거 선정



'17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시범사업 추가신청 사업현황

담당	사업명	사업비(천원)			추가 사업량	신청가능 지역	문의 전화
		계	보조	자부담			
농촌자원	농촌자원 6차산업화 사업	43,200	30,000	13,200	1	구좌, 성산, 표선, 우도	760-7621, 4

1

농촌자원 6차산업화 사업

(담당자 : 농촌사회지도과 방인경, 760-7624)

목 적

- 농업을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농가형 6차 산업 육성
-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7년 10월 ~ 12월
- 추가사업량 : 1개소
- 사업비 : 43,200천원(보조 30,000, 자부담 13,200)
- 사업내용
 - 농촌자원 활용 가공, 체험 및 유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 조성 및 기자재 구입
 - 농산물 가공 사업장의 경우 위생적인 환경으로 설계할 것
 - 사업장 신축은 불가
 - 상표등록 및 출원, 제품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

사업대상

-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·외식·체험분야와 농촌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농업인,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

시범요인

- 지역자원 활용 상품화 기술개발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
- 농촌자원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증대로 농촌활력화

기대효과

- 농촌체험 활동의 다양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
- 농업을 기본으로 한 2·3차 산업과 연계한 융·복합산업으로 활력 있는 농촌조성

농촌자원 6차산업 활성화 시범 사업계획서

1. 일반현황

대 표 자					영농 규모	소득 (평균,연간)	주작목	경력 및 자격증
성명	성별	나이	주 소	전화번호 (휴대폰)				

2. 시설현황

시설명	시 설 규 모		기 타
	실 내	실 외	

3. 사업내용 및 필요성

사업내용

○

필요성

○

4. 사업비 집행계획

주요내용	사업추진일정	사업비 집행계획(단위 : 천원)		
		계	보조금	자부담

5. 기대효과

농촌자원 6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현지심사표

사업신청자

성 명	주 소	소재지	신청면적	작 목
			m ²	

공통항목 : 50점

조사항목	조 사 내 용	배 점	점수	확 인 내 용
1. 보조사업 수혜여부	○ 3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- 미수혜(25), 1천만원 미만(15), 2천만원미만(10), 3천만원미만(5)	25		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
2. 사업예정지 위치	○ 접근성 및 파급효과 - 왕복차선 대도로변(7) - 농로변(5) - 기타(3)	7		
3. 농업전문 기술습득	○ 최근 3년간('14'16) 전문교육 수료 - 100시간 이상 10점 (10시간 단위 1점 부여) ※ 농업관련 학교 졸업(가점부여 3점)	10		농촌진흥기관이나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.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가점 2점
4. 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	○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(5) - 본인 및 배우자(5), 임차등기(3), 직계존속(1) ○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(3) - 본인 및 배우자(3), 임차등기(1)	5		
5.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	○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- 단체장 : 중앙(3),도·시(2),읍면리(1) - 임 원 : 중앙(2),도·시(1.5),읍면(0.5) - 강소농육성 대상자(1)	3		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
소계		50		

□ 고유항목 : 50점

조사항목	조 사 내 용	배 점	점수	확 인 내 용
6. 사업계획의 구체성 (15)	○ 구체적 사업 계획성 -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4),	10		시범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 가능성 등
	○ 제품 생산·판매 및 홍보 계획성 -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	5		
7. 사업추진 기반여건(15)	○ 사업장 기반 여건 -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4)	10		숙박, 음식, 체험, 수용력 등의 기반여건 등
	○ 주변자원 연계 가능 및 활용성 -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	5		
8. 사업추진 타당성 및 능력(15)	○ 관련분야 전문성 -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	5		6차 산업 관련(창업 가공, 농촌체험)실적 및 활동 등
	○ 시범사업 추진 의지 - 매우높음(5), 보통(3), 낮음(1)	5		
	○ 자부담 확보 능력 - 매우높음(5), 보통(3), 낮음(1)	5		
9. 지역경제 파급효과 (5)	○ 지역경제 파급효과 - 매우높음(5), 보통(3), 낮음(1)	5		일자리 창출, 소득증대 효과 등
소 계		50		
합 계		100		

□ 종합의견

심사일 : 2017년 월 일

심사자 : 직 성명 (서명)

2017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

< 목 적 >

- 새로 개발된 신기술 및 농업현장 애로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선정, 사업운영,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방향 및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
-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·투명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

I. 운영방향

- 농촌지도사업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
- 단계별 연사회,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

II. 관련근거

- 농촌진흥법 제16조 및 제25조
-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(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)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III.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

-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, 농자재,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.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및 단체 등

1.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 제3조 및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” 제7조 에 정한 단체와 “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”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
2.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명시된 단체 또는 품목별 조직체 등
3.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단체

-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
 - ※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

3. 지원형태 및 조건

- 자금재원 : 국고, 지방비 등
- 지원조건 : 보조재원 + 자부담
- 보조율적용
 - 국고보조사업 보조 지원 비율 및 도 민간보조금 지원비율 준용

IV.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내용

1.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

□ 세부계획 수립

- 도원 및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
 -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 산출내역 등 기준안 마련

□ 사업홍보

- 홍보방법 : 홈페이지 공고
- 홍보내용 : 사업내용,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선정절차, 제외요건 등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사항 제시

□ 사업신청

- 사업신청 기간 : 2017. 9. 20. ~ 10. 10.
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

< 신청서류 >

○ 기본서류

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배우자 포함)
-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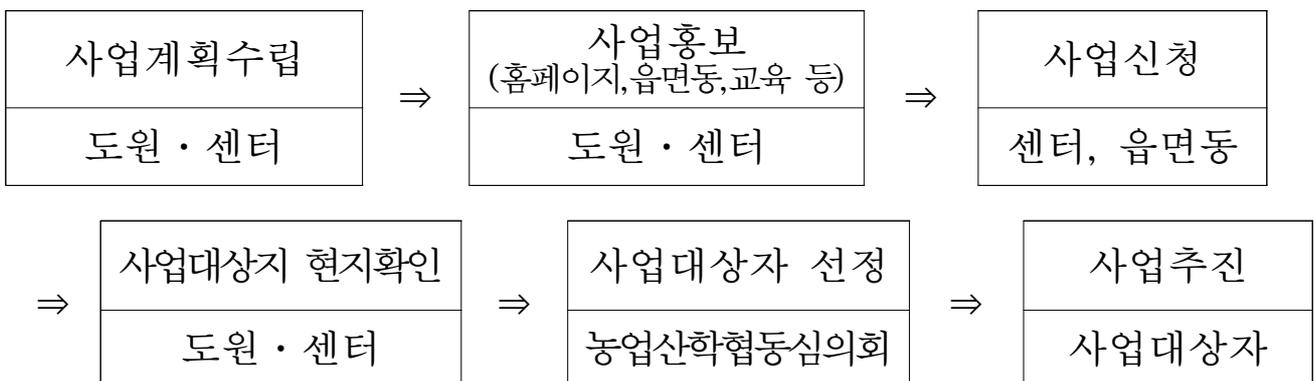
○ 추가서류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인)
-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
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
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굴대학 등)

2.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

□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
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-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, 영농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
 -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-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
 - 전년도 1천만원 이상,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자와 전년도 5천만원 이상, 최근 3년이내 2억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선정시 후순위로 배정
(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배제)
-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, 선정기준 이행
-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
-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



<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하며 부득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사업신청 해당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 까지, 하우스시설 및 건물(저장고, 가공실 등)을 신축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어 농지원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함.(사업수행 시 사후관리기간까지 계약 잔여 기간이 남아야 함)
- 단체사업자 중 하우스시설 및 건물(저장고, 가공실 등)을 신축하는 시범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단체 명의로 등기(10년 이상 임대차 계약 포함)되어 있어야 함.
-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 제91조,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함.
- 시범사업은 동일분야가 아니라도 1개 사업 이상 신청 불가

□ 사업대상자 선정

-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현지심사 결과 및 우선 순위 작성
-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 (심의위원 및 기술보급 전문위원으로 15명 내외)
 -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에서 현지심사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(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정, 농촌진흥청 대통령령 제25179호)

※ 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

-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- 농업기술원(농업기술센터)은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대상자(후순위)를 선정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자를 선정
 -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상정 의결시 순위 확정 후 사유발생시 후 순위자가 사업 수행
- 사업 대상자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의결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.
- ※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작목입식이나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실증시험 재료비 사업인 경우는 자체 선정 심의회 운영 사업 추진

< 사업대상 제외자 >

-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, 목적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
-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배우자포함)
 - 농협 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
 -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
-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
 - ※ 단, 고품질 감귤생산 패키지 사업, 노지감귤 성목이식 등 시범사업 내용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 적용
-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
- 감귤분야사업: 1997년 1. 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소유자

3.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

□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

-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
 - 농업기술원장(농업기술센터소장)은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·승인할 수 있음
 - 부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국비사업인 경우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- ※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·추진

4.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

□ (부가가치세 환급)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다만,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는 사업 계획을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(보조금 지출시 절차) 사업현장 확인 강화를 통한 보조금 교부시 투명성 증대 및 사업효율성 제고

- 사업장 현장 확인 검수, 사업확인 출장 복명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참여 투명성 제고 및 사업 효과 거양
- ※ 시범사업장에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등 시설물 지원사업인 경우는 명판 부착 - 보조조건에 명시

□ (보조금 집행 점검)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년1회 이상 확인

※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및 재산처분의 제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기등기 제도도 병행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·공포), '15. 7월 7일 부터 시행

○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(附記登記)를 하여야 한다.

-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
-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

5. 시범사업 평가

□ 사업추진성과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평가회 및 홍보 강화

○ 사업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

○ 전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및 결과 평가 실시

- 중간 및 결과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위주의 평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도출 미흡

○ 사업효과가 높고 시범사업 수용률 및 농가보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대보급사업으로 확대 추진 ⇒ 다음년도 예산 반영

6. 시범사업 사후관리 강화

-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
 - 연 1회 이상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인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조치
 -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는 확인일자·사유·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
 - 과 및 센터소장 책임하에 현장 점검 후 계통 보고 실시
 -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 보고 : 과·센터소장 → 국장 → 원장
 -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작성 체계화
 - 당해연도는 연 3회, 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(2인 이상) 출장 복명 및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 거양
- <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>

구 분	부동산 및 종물	기계·장비	
		1천만원이상, ¹	1천만원이하, ²
관리대장	○	○	×
정기점검	○	○	×
재산처분시 승인	○	○	○

※ 이동식 기계·장비인 경우 ¹ 은 500만원 이상, ² 는 500만원 미만

-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
 -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 3년이며 실증 시험 등 재료비 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함.(결과보고서 작성)

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신기술보급사업 지침 적용 관리

재산명	사후관리		처분제한기준	비 고
	부 터	까 지		
시 설	취득일	4~6년	양도, 용도변경 등	1천만원 이하 소규모장비는 3년, 그이상은 5년
부 속 물	취득일	3년	양도, 폐기 등	
장 비	취득일	3~5년	양도, 폐기 등	

※ 시설인 경우 비닐하우스, 소규모저온저장고 등은 4년, 건축물은 6년
 소규모농기계, 히트펌프, 스프링클러 등 부속물은 3년이며 보온
 커튼, 지주대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

○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
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

□ 보조재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일시적 자금난 등 경영
 압박 완화를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를 마련 운용

○ 담보제공 승인한도 =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× 자부담액/총사업비

< 별 표 3 >

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

신청자 인적사항

사업자(단체)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대표자(성명)		전화번호	
신청사업명			

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
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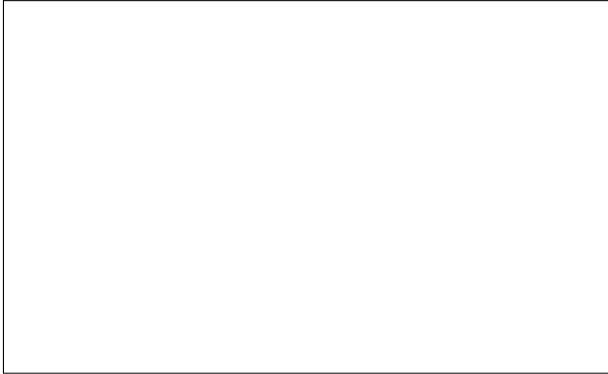
신 청 자 :

(날인,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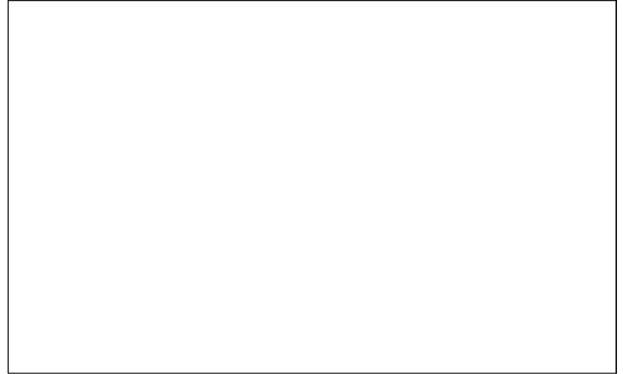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< 붙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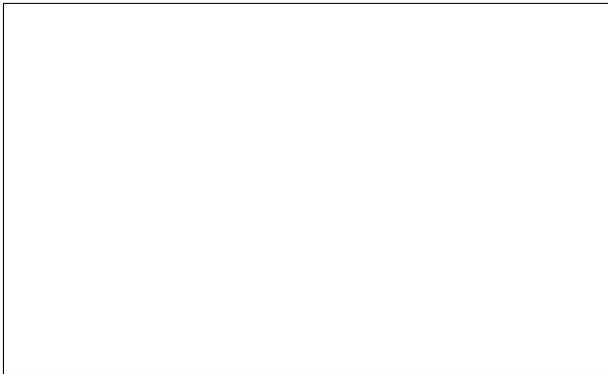
사 진 대 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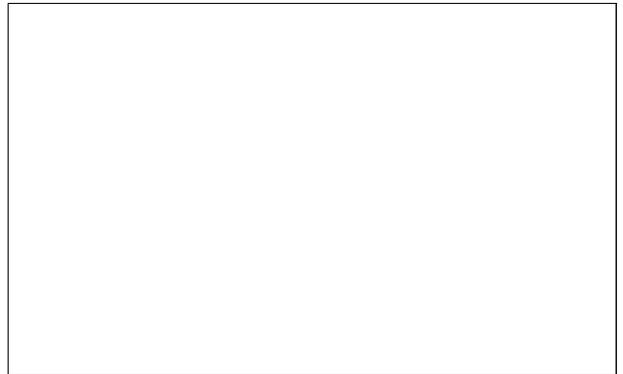
< 사진설명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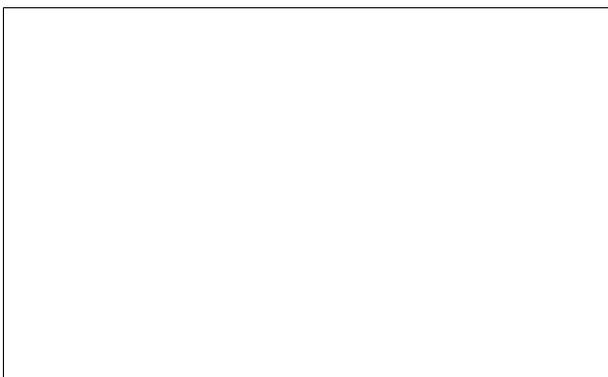
< 사진설명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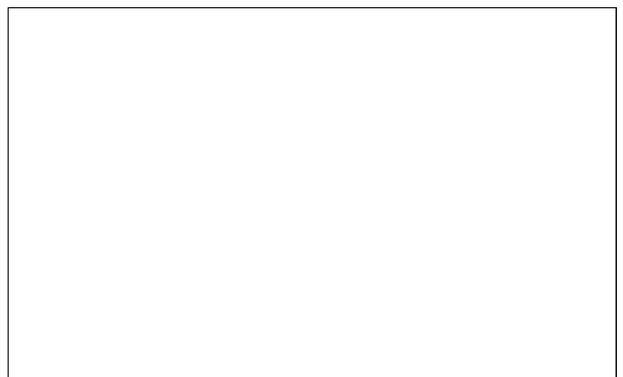
< 사진설명 >



< 사진설명 >



< 사진설명 >



< 사진설명 >

< 별 표 5 >

시범사업장 및 농기계 등 지원 표찰(안)

□ 시범사업장

- 입간판 디자인(안)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맞는 표찰수립
- 설치장소는 보이기 쉽고 사업장 주 출입구에 설치
- 입간판 제작(안) : 90 × 60cm

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	
사업명	
사업장현황	작목, 사업규모, 농장주
시범요인	○ ○ ○
담당공무원	담당부서 담당자 000(전화번호)
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○ ○ 농업기술센터	

□ 농기계 등 소규모 시설

- 시설물 또는 건축물 전면에 부착
- 명판 제작(안) : 50 × 30cm, 20 × 10cm 등 대상물에 따라 조정

사업명
이 농기계(저장고, 차량 등)는 000(목적, 효과)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아 구입(설치)된 것입니다. (00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)